

금정소식

선 람	기 관 의 장

금정구 구보 호외 제 360-6 2020. 10. 13.(화)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29호) ----- 2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30호) ----- 8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31호) ----- 13

회람								
-----------	--	--	--	--	--	--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29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구 세 감 면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입 법 예 고

1. 개 정 이 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어 이를 삭제하고,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되는 구세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함(현행 제2조 삭제)
- 나. 감면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3조)
 -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4조)
 -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안 제6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안 제8조)

3. 의 견 제 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519-4182, FAX : 519-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30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 추진에 따라 전국통합지방세시스템인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2조, 제23조)
 나.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불필요한 내용 삭제함
 - 세입징수 결과제출 규정 삭제(현행 제11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519-4182, FAX : 519-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23조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서 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 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 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u>지방세정보 통신망</u>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 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p>	<p>----- ----- ----- -----<u>지방세통합 정보통신망</u>----- ----- -----.</p>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1131호

입 법 예 고 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3일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청 장

부 산 광 역 시 금 정 구 지 방 세 무 조 사 운 영 규 칙 일 부 개 정 규 칙 안 입 법 예 고

1. 개 정 이 유

- 가. 차세대 지방세정보통신망 구축 추진에 따라 전국통합지방세시스템인 지방세 통합정보통신망으로 명칭 변경한 「지방세기본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
 나.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 및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 요 내 용

- 가.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개편 사항 반영함(안 제2조)
 나. 상위법령의 내용과 일치 및 위임하지 않은 내용 삭제함
 - 특별세무조사 대상자의 포괄규정 삭제(현행 제10조제1항제4호 삭제)
 - ‘수색, 압수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삭제(현행 제23조제1항의 단서 조항,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삭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삭제)

3. 의 견 제 출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참조 : 세무1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전화 : 519-4182, FAX : 519-41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금정구 홈페이지(<http://www.geumjeong.go.kr>)에 게재되어 있음

니다.(부산광역시 금정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공지/입찰/고시 > 입법예고)

붙임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

부산광역시 금정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의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p><u>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1. 범칙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u></p> <p><u>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u></p> <p><u>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압수·영치 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u></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